

[최저임금분쟁] 최저임금액 미만 보수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2930 판결



1.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28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판결요지

주차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 보수를 지급함. 사용자를 벌금 2백만원 처벌함.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처

별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반의사불처벌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구별.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2930 판결

Global 기업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비용절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